

국제위원회 규정

목 차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	1
제2조(목적)	1
제3조(기능)	1
제4조(구성)	1
제5조(위원의 선임)	1
제6조(위원의 직무)	1
제7조(위원의 임기)	1
제8조(위원의 해촉)	1
제9조(회의소집)	2
제10조(의결정족수)	2
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	2
제12조(수당·활동비·여비지급 등)	2
제13조(제척 및 회피)	2
제14조(비밀누설금지)	2
제15조(규정 적용)	2
부칙	2

국제위원회 규정

제 정 2016. 12. 21

개 정 2018. 12. 19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(이하 “도핑방지위원회”라 한다) 「정관」 제37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며, 그 명칭은 국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정관 제5조제4항에 따라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하여 조사, 연구 및 심의를 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

1. 도핑방지 국제협력 중·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
2. 국제도핑방지 관련 회의 및 행사의 국내개최와 참가에 관한 사항
3. 국제도핑방지기구와의 업무에 관한 사항
4. 도핑방지 국제동향·정보수집에 관한 사항
5. 기타 도핑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18.12.19.>

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.

제5조(위원의 선임) 위원장과 위원은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18.12.19.>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날로부터 계산한다.<개정 2018.12.19.>

② 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회의소집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.

제10조(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장은 심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·활동비·여비지급 등) ① 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직무수행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직무 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비용 등의 실비는 도평방지위원회 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제척 및 회피)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.

제14조(비밀누설금지) ① 위원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규정 적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도평방지위원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.

부 칙 <2016.12.21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도평방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12.19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도평방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